

## 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8. 5. 28.(수), 15:00

2. 장 소 :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송도균 부위원장  
이경자 위 원  
형태근 위 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이병기 위 원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## 바. 의결사항

### 1)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요청안에 관한 건(2008-11-023)

- 차양신 전파기획관의 보고를 받고,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요청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구, 체계,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.
- 「전파법」 개정으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구체화함.
-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.

### 2) 「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」 제정에 관한 건(2008-11-024)

-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의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」 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- (구)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「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」을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정부조직개편 내용에 맞추어 주체 명칭을 변경함.
-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외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자를 「전기통신사업자」에서 「전기통신사업자», 「방송사업자»,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」 등으로 확대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추가함.

### 3) 「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」 제정에 관한 건(2008-11-025)

-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의 보고를 받고, 「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」 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- (구)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「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」을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주체 명칭을 「방송통신위원회」로 변경함.
- 「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」이 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」로 대체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.

### 4)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」 제정에 관한 건(2008-11-026)

-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의 보고를 받고,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」 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- (구)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내부규정으로 운용하던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」을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주체 명칭을 「방송통신위원회」로 변경함.

-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제4호가 개정되어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.

#### 5) 「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」 제정에 관한 건(2008-11-027)

-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의 보고를 받고, 「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」 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- (구)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내부규정으로 운용하던 「통신위원회 재정규정」을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으로 제정하면서, 정부조직개편 내용에 맞추어 주체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업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함.

사. 기 타

#### 1) 차기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5월 30일(금)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.

### 6. 폐 회(15:20)